

1992년 2월 26일 제123회 중의원 외무위원회

○ 일시: 1992년 2월 26일(수) 오전 10시 1분 개의

○ 발언자:

- 도이 다카코(土井たか子) 의원(일본사회당 소속 중의원 의원, 일본사회당 위원장, 중의원 의장 등)
- 야나이 순지(柳井俊二) 정부위원(외무성 조약국장, 외무사무차관, 주미대사, 국제해양법재판소장 등)
- 와타나베 미치오(渡辺美智雄) 국무대신(세무사, 정치가, 중의원 의원, 대장성·농림수산성·후생성 장관, 부총리)

○ URL: <https://kokkai.ndl.go.jp/#/detail?minId=112303968X00219920226&spkNum=77¤t=39>

○ 해제(개요 및 특징)

도이 의원은 **종군위안부**를 포함한 강제연행자들에 대한 보상 청구가 이미 종료되었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추궁하는데, 이에 대해 야나이 정부위원은 1965년 한일협정이라 답함. 또 **종군위안부**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국민으로서 당연히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도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와타나베 대신 역시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답변함. 그러나 **위안부** 문제는 인도적·정치적 문제로서 실태조사가 끝난 후 판단해야 할 것이라 답변함.

○ 주요 내용 번역

- ▷ **도이 위원** “최근 뉴스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**종군위안부** 문제를 포함하여 강제연행된 사람들, 종군한 사람 혹은 일본 국내에서 탄광이나 건설 현장이나 군수산업 등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사람도 있습니다. 그런 사람들로부터 보상 청구가 있을 때, 이미 이 문제는 해결됐다는 답변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. 해결됐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?”
- ▷ **야나이 정부위원** “잘 아시다시피 1965년 「일한청구권·경제협력협정」에서는 일한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청구권 문제는 일한 간의 문제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. 또한 아시다시피 이 해결과 병행하여 무상 3억, 유상 2억 달러라는 경제협력을 실시한 것입니다. 이른바 개인의 청구권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일한 간의 조약상 처리 대상이라는 것은 조문 상으로도 명확합니다. 따라서, 일한 간의 문제로서 이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.

근거라면, 1965년의 일한 간의 청구권·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입니다.”

(중략)

- ▷ **도이 위원** “여기서 외무대신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. 저도 듣고서 가슴이 미어 집니다만, 지금 빈번히 문제가 되고 있는 **중군위안부** 문제, 어떻게 항변하더라도 일본 국민으로서 부끄럽습니다. 너무나 부끄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외무대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?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? 어떻습니까?”
- ▷ **와타나베 국무대신** “사람을 죽이거나 상처 입히거나, 그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로 불행한 처지에 놓이게 한 것은 명백히 전쟁의 죄악으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.”

(중략)

- ▷ **와타나베 국무대신** “저는 양쪽의 의견을 꼭 들어왔습니다만, 역시 일본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률에 적혀 있는 대로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. 다만 문제는, 법률문제로는 재판소가 나중에 결론을 어떻게 낼 것인가라는 문제이겠지요. 그러나 이 **중군위안부** 문제는 법률문제가 아니라 인도적인 문제이자 정치문제임은 틀림없습니다. 매우 가슴 아픈 이야기로, 우선 그 실태를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관방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으므로, 그런 실태를 바탕으로 어떤 정치적 판단을 할 것인가는 법률문제가 아닙니다. 그러므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, 저는 어느 쪽으로든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”